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57호의4서식] <신설 2020. 5. 27.>

[] 행 정 처 분 [] 판 결 · 결 정 정보통보서

					(앞쪽)
	① 상호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			(# 1)
ᆌᅱᅴᅥ	③ 성명(대표자)	④ 생년월일			
행정처분 대상자	⑤ 주소				
	⑥ 업종	(전화번호:)
	⊎ но				
① 행정처분 기관		8 행정처분 날짜	년	월	일
9 위반 내용 (위반 조 문)		⑩ 위반 날짜	년	월	일
① 행정처분 내용 (근거 조문)					
⑩ 행정처분 불복 여부					
® 판결、결정 기관		① 판결·결정 날짜	년	월	일
ⓑ 판결·결정 주요내용		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행정처분 또는 판결·결정에 관한 정보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 청장, 유역(지방)환경청장

직인

첨부서류

- 1. 행정처분 부과 문서 1부.
- 2. 판결 결정문 1부.

작성방법

- 1.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.
- 2. ⑥란은 중간재활용업, 최종재활용업, 중간처분업, 최종처분업, 폐기물처리 신고 등으로 적되, 재활용업 및 중간처분업의 경 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, 일반소각, 고온소각, 열분해, 파쇄,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,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,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. 예) 중간재활용업(정제)
- 3. ⑨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습니다.
- 4. ⑫란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처분 불복 여부에 관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. 예) 행정심판 제기 또는 제기 예정

